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 미 영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호로 2018년 8월 31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겁고 유익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안 제3조~제4조)
- 다.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5조)

라.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6조)

마.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7조~제8조)

바.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9조~제10조)

사. 표창 등(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금지 행위에 대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월1회 이상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과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가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 우리구는 2018년 8월 현재 399개의 놀이시설¹⁾이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2018.8월 기준

구 분	계	주택 단지	어린이 집	도시 공원	유치원	학교	식품 접객	대규모 점포	기타
시설수	399	239	62	35	25	24	3	4	7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 련 법 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6. 7. 6.>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